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07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07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

	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41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2.64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제2호)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07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07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

	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2.97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09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코리아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07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07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

	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88% 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56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 년 11 월 07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김정표	**운용전문인력** 오현정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 년 11 월 07 일 책임운용인력 변경(김정표 → 오현정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김정표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오현정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 년 11 월 07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김정표	**운용전문인력** 오현정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 년 11 월 07 일 책임운용인력 변경(김정표 → 오현정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김정표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오현정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Up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07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	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투자위험등급	**4등급(보통 위험)**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**3등급(다소 높은 위험)**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책임 : 김정표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책임 : 김지상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투자위험등급	**4등급(보통 위험)**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**3등급(다소 높은 위험)**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07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김정표→김지상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 책임 : 김정표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 책임 : 김지상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

	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소각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	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9.78%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보통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0.04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	(생략)	(업데이트)

등에 관한 사항		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UpPlus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07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**4등급(보통 위험)**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**3등급(다소 높은 위험)**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책임 : 김정표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책임 : 김지상

[투자설명서(증권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**4등급(보통 위험)**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**3등급(다소 높은 위험)**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07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
		(김정표→김지상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 책임 : 김정표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 책임 : 김지상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9.97%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보통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0.16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UpPlus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(제2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07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	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책임 : 김정표	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책임 : 김지상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07일 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김정표→김지상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
	책임 : 김정표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책임 : 김지상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 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소각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 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

	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	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UpPlus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(제3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07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	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책임 : 김정표	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책임 : 김지상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07일 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김정표→김지상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
	책임 : 김정표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책임 : 김지상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 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소각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 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

	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	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UpPlus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(제4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07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	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책임 : 김정표	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책임 : 김지상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07일 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김정표→김지상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
	책임 : 김정표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책임 : 김지상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 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소각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 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

	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	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포커스포트폴리오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(제2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07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	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책임 : 김정표	**운용전문인력** 책임 : 김지상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07일 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김정표→김지상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책임 : 김정표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책임 : 김지상

	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 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소각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 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

		수하고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SmartUpPlus포커스포트폴리오증권투자신탁(제5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9년 11월 07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	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[요약정보]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책임 : 김정표	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책임 : 김지상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9년 11월 07일 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김정표→김지상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
	책임 : 김정표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책임 : 김지상 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 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소각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	**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6.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. 기타 제한 사항 -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**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

	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	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